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·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29877호)

1.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약 70% 수준으로 완화(별표2)

○ 예) 실내건축공사업 등 자본금 2억원 → 1.5억원

-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기준 : 자본금의 20%~50% → 25%~60%
(제13조제1항제1의2호가목)

※ 시행일(19.6.19) 이전 등록하거나 등록 신청한 자도 적용. 단, 등록기준 미달 여부 판단은 '18.12.31 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

2.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기준 세분화 등(제33조제2항)

○ 불법하도급, 산재사고 공표 등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 제한(별표3의2)

* 공기업·준정부기관, 지방공사·공단(약280개 기관)

○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: 영업정지(4월), 과징금(4~16%)

○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 받은 경우 : 영업정지(8월), 과징금(8~30%)
(별표6 제2항 나목 제10호·11호)

3.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 의무 위반시 제재(별표7 제2항 가목 제23호)

○ 과태료 처분 : 1차(100만원), 2·3차(150만원)

4.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시 벌점부과(제28조)

○ 수급인이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하수급인의 산업재해,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(별표3)

○ 벌점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(제79조 및 제88조의2)

- 10점 초과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

- 5점 초과시 과태료

※ 부과된 벌점은 3년 경과시 소멸

5.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(별표 6, 7)

- 그 위반 행위를 지시·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→ 영업정지(8월), 과징금(8~30%) (별표6 제2호 나목 제9호)
- 그 위반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→ 과태료(1차 500만원, 2차 1000만원, 3차 1500만원) (별표7 제2호 카목)

6.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마련(제64조의4, 별표 6, 7)

※ 시행일 : '19. 6. 19

- 다만, 제26조의3(공공기관 범위) 및 제34조의3(하도급 계약자료 공개 대상 공공기관) 별표 7 제2호사목(공동수급체 변경신고) 및 하목(하도급계약자료 미고지 등)의 개정규정은 '19. 7. 1부터 시행

□ **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(국토교통부령 제627호)**

1.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 게재(제27조)

-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(별지 제24호의3 서식)를 **건설산업종합 정보망에 게재**

2.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(제27조의5)

-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내역을 직접 서면으로 교부, 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입찰시스템, 내용증명우편·전자우편·팩스 등을 통해 공개

3.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예외기준 마련(제28조제5항)

-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**30일 이내인 공사인 경우에는 의무사용 제외**

4.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예외 기준 신설(제34조의4, 별지 제26호의3)

-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보증 허용
 - 도급금액이 **1억원 미만** +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
 - 하도급 금액이 **5천만원 미만** +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

- 도급·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**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**

※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(부칙 제 2조)

5. **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기준 신설**(제32조의2, 별표 6)

○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자 대상

-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(별지 제32호 서식)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**매년 2월 15일까지** 국토부에 제출

○ **시공능력평가**시 3등급으로 나누어 **실적평가액에 반영**(별표 1, 별표2)

※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. 8. 1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(부칙 제3조)

6. **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등** (제34조의5, 별지 제26호의 4)

○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별지 제26호의 4 서식에 따라 통보

7. **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** (제36조의5)

○ 수급인이 불법채하도급을 한 하수급인에게 **사전에 채하도급 제한 사유 설명하지 아니하였거나, 하수급인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 미확인 등 관리의무 미이행 사유** 규정

※ 시행일 : '19. 6. 19

- 다만,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관련 제27조의5의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(*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)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,
고용평가 시공능력평가 가산 관련 제32조의2, 별표 1, 별표 2, 별지 제25호의 2서식(*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)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